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265 2010. 10. 11()

.....

공 고

제2010-5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10-5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2

제 관											

: : (309-4071)

공 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565호

예 고 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에 따라 부과 의결기준 마련과
※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2010.8.2)
- 기타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 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사건 처리기준과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강화

3. 개정의 주요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 임용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부가금 기재
- 징계부가금 부가기준 신설(안 별표1의 2)
- 기타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 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 용어정리(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 제6조, 제7조 관련)
- 별표 1의2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사건 처리기준(안 제2조 제1항 관련)
-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안 제3조 관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051-309-4103, 410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로 하고, **제1항 중** “징계혐의자의”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으로 하고,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로 하고,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으로 하고, 제3항 중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징계를 의결하여야”를 “ 징계 등을 하여야”로 하고 제2항중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등을”로 하고, 제1호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제2호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별표 2의 비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중 “※비고 : 1, 2, 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을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담당자와 감독자의 공동모의에 의한 비위행위는 담당자와 감독자를 1순위로 문책함.”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징계의결서의”를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로 하고

제2항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의”로 한다.

제17조(“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등”으로 하고) 제1항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등“으로 하고,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으로 하며. ”기재하여야 하며“를 ”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로 하며,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적용한다.“ 신설한다.

별표 4의 100만 미만 능동 중 “경징계”를 “중징계”로 하고,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중 “중징계”를 “중징계(정기·상습적인 경우 : 해임·파면)”으로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중 “중징계”을 “해임·파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 및소청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p> <p>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p>	<p>제1조 (목적)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p> <p>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 ----- 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p> <p><단서 삭제></p> <p>② -----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 ----- ----- ----- ----- ----- -----.</p>

현행	개정안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징계의결</u>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생략) 2. (생략)</p>	<p>③ ----- ----- ----- -----<u>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u>(이하 “<u>징계의결등</u>”이라 한다)을 ----- .</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 사건 처리기준)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생략) 2. (생략) 3. (생략)</p>	<p>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 사건 처리기준) <u>징계의결등 요구권자</u>는 ----- ----- ----- ----- ----- .</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p>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u>징계를 의결하여야</u>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p>	<p>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① ----- ----- ----- ----- ----- ----- <u>징계의결등을 하여야</u> ----- .</p> <p>② -----</p>

현행	개정안
<p>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징계 의결</u>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u>징계 사건</u>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u>징계 사건</u> 3. (현행과 같음) 	<p>----- ----- ----- <u>징계의결등</u> ----- ----- 1. ----- ----- ----- <u>징계등 사건</u> ----- 2. ----- ----- <u>징계등 사건</u> ----- 3. (생략)</p>
<p>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u>징계의결서의</u>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u>징계의결서의</u> 의결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p>	<p>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 ----- ----- ----- <u>「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u> ----- ----- ② ----- ----- ----- <u>징계등 의결서의</u> ----- ----- ----- -----</p>
<p>제7조 (<u>징계의결</u>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u>징계의결</u>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제6항의 <u>규정에</u> 의하여 <u>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u> <u>징계의결</u>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p>	<p>제7조 (<u>징계의결등</u>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u>징계의결등</u> ----- ----- ----- <u>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u></p>

현행	개정안
<p>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향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p> <p><u><단서 신설></u></p> <p>②제1항의 경우에 <u>징계의결</u>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u>징계</u>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u>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u>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u>징계</u>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u>징계의결</u>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p>	<p>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p> <p>-----</p> <p>-----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p> <p>----- .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와 별표5를 각각 적용한다.</p> <p>② ----- <u>징계의결등</u> ----- ----- <u>징계등</u> -----</p> <p>-----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p> <p>----- <u>징계등</u> -----</p> <p>----- .</p> <p>③ <u>징계의결등</u> -----</p> <p>-----</p> <p>-----</p> <p>----- .</p>

[별표 1의2] 신설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담당자와 감독자의 공동모의에 의한 비위행위는 담당자와 감독자를 1순위로 문책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표 4] 개정 및 신설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제7조 관련)

구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u>중징계</u>	경징계	중징계	<u>해임·파면</u>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중징계	중징계	<u>중징계</u> (정가상습적인 경우 : <u>해임·파면</u>)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5]<신설>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 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566호

예 고 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임용권자를 세분화하여 임용시 기관 상호간 마찰 최소화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별정직공무원 임용 문호 개방
- 임용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으며
-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정과 시간외 근무 시행에 따른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 규정 신설 등 전면개정

3. 개정의 주요내용

- 임용권자를 세분화하여 지방의회 사무국장 신설(안 제3조2항)
-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3항 및 별표)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근거 신설(안 제4조 의2)
-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서관 및 비서채용,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 근무상한 연령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안 제8조 제1항)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음 신설(안 제8조 의2)

-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
- 근무성적의 평정을 인사관리 반영, 시·군·자치단체 공무원 지정근거 신설(안 제2조, 안 제 12조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051-309-4103, 410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11.16>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16>

제4조 (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 7. 1>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1999.11.16>

제8조 (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6>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및 ④ 삭제 <1998.10.10>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역시(특별시·도·시·군·자치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삭제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가) 따로 정한다.

부 칙 <1985.2.16>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법률 제 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근무상한 연령의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 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 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⑦생략

⑧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을 법 제2조 제3항제2호“로 한다

⑨ ~ <27> 생략

부 칙 <2010.1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임용권자) ①(생략)	제3조(책임완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속기관장의 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속기관장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생략)	제4조(임용자격) ①(현행과 같음)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u>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u> 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u>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u> 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②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생략)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현행과 같음)
제7조(전보) (생략)	제7조(전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p>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8조(근무상한 연령)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8조의 2(교육훈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p>
<p>제9조(당연 퇴직) 생략 제10조(직권면직)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p> <p>제9조(당연 퇴직) (현행과 같음) 제10조(직권면직) (현행과 같음)</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삭제></p>
<p>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p>	<p>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p>
<p>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p>
<p><신설></p>	<p><삭제></p>
<p>제11조의 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제11조의 3(휴직의 효력) (생략)	제11조의 3(휴직의 효력) (현행과 같음)
<p>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 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간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삭제></p>
<p><신설></p>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 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2조의 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p> <p>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p>
제13조(징계) (생략)	제13조(징계) (현행과 같음)
제14조(일반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용) (생략)	제14조(일반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용)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생략)	제1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 자격
3급상당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용자격
7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